

현재,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 결정

선거항배 가를 큰 변수... 정치권 득실 계산

공정성 확보 등 문제... 올 대선부터 시행될수 있을까 촉각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헌법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본권 제한은 예외적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로 볼 수 있다.

해의 단기 또는 장기 체류인지 여부를 떠나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한 완전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며,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정권 '불허'→'허용'으로 바뀐 배경=현재는 19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실무상 어려움 등을 논리로 제시했다.

현재는 해외거주 국민의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선거기간을 연장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선거비용 증가 등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고 해외의 공정

선거 감시체제가 미약해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현재는 8년 만에 관례를 변경하면서 기존 논리가 설득력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현재는 "선거비용 증가 및 국가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 경제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 수 없고, 비용 부담 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진 출구한 자들이라고 해서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제화시대에 해외 이주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본적 권리 행사가 부인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선거 영향력' 확대= 그동안 재외국민은 체류국에서는 물론

고국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만한 재외국민 출신 국회의원을 국회에 내보내지 못하는 등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정치적 소수자'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해외 체류자들의 '표심'(票心)이 선거의 향배를 가능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외교관·유학생·주재원 등의 해외 체류자는 114만명이며, 재일교포 등 영주권자는 171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는 약 75%인 210만여명이다.

▶'공'은 정치권으로... 대선부터 가늠할 수도=현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재외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선거기술적

헌법불합치 조항과 헌재 판단

헌법불합치 조항	조항내용	헌재판단
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2항 제1호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평등원칙 위반,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 침해
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제3항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월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 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원임명권 침해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제1항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매다 구청·시장·읍장·면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된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 침해

측면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또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 참여권을 부여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라는 요건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헌재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확대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급히 재외국민의 선거권 실현수단을 마련해

재외국민 현황

구분	숫자	
단기체류자	일반	908,228
	유학생	239,127
영주권자	1,708,210	
시민권자	3,782,773	
총계	6,638,338	



2002년 서해교전에서 산화한 참수리-357호정 잠정 운영하함 진수 2002년 서해교전에서 산화한 참수리-357호정 잠정 운영하함 진수 2002년 서해교전에서 산화한 참수리-357호정 잠정 운영하함 진수 2002년 서해교전에서 산화한 참수리-357호정 잠정 운영하함 진수

“늦었지만 환영... 올 대선 투표할 수 있게”

재외동포 반응

헌법재판소가 28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동포와 시민단체 등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올해 대선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아쉬워했다.

틀고문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700만 동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그러나 선거인명부 작성에 불가하게 돼 다가올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혼란상태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다시 한번 동포를 정치적으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동포는 한민족의 고마운 자산이라는 평가를 확대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참여연대 양창영(호서대 교수) 대표는 “현재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까지 동포 참정권을 제한하는데 앞장선 위정자들은 300여만명의 재외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싱턴한인연합회 김영근 상임고문은 “정치권은 재외국민이 올해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4기 민선자치 1년

중앙에 휘둘리는 자치정부

간섭·규제 ‘올가미’ 여전

“결국으로는 자치라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려면 무엇 하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것은 그렇다치고 아직도 간섭과 규제가 심해 때때로 서울이라는 ‘골레’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남도에서 정부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투자유치·산단조성 개발제한에 묶여 J프로젝트·문화수도 조성 정부가 ‘발목’

정부의 소홀한 지원과 규제 때문에 가장 절박함을 호소하는 분야는 경제부처이다. 여는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지만 투자유치나 산업기반 조성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 술 더 떠 관련 부처의 높은 규제 벽부터 실감해야 한다.

전남도가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특구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의 성공의 관건은 적극적인 투자여건 마련에 있지만 정부는 대응은 극히 소극적이다.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에 규정돼 있는 외국인투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다. 기업도시에도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처럼 외국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외국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달라는 주문이지만 반응은 탁발치 않다.

또 J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예정지인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의 양도양수 근거를 마련하고 가능한 빨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정부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딱 부러진 대답은 없다.

광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상황은 동일하다. 문화전당은 전역 국비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점차 문화중심도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도심 리모델링과 관련, 정부는 지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비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심리모델링에는 총 2조9천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광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다. 결국 문화중심도시의 완성 여부가 문광부의 손에 달린 셈이다.

지만 개별 법률에 따른 '협의권한'을 들이밀고 나오면 지자체는 두 손 드는 수밖에 없다.

산단조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건교부), 공유수면매립계획 협의(해수부), 사전환경성검토(환경청),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 20만㎡이상 전용협의(농림부), 50만㎡이상 산지전용협의(산림청) 등 '복병'들이 지자체를 꼼짝 못하도록 얽아매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가 부족한 광주시는 비도시지역(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나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밖에 되지 않아 5만㎡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2~3년, 길면 5~7년이 걸린다. 대부분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단체장이 바뀌는 일도 일수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재정 정책도 문제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비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올린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들은 정부 고부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해도 개발 일은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주고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산입기반 확충을 위해 산입 단지를 조성할 경우 330만㎡ 미만은 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

www.morado.co.kr

모라도 창립 40주년기념 Festival 2007. 6. 22-7. 17

패션 외길 40년, 가야할 40년

모라도는 1967년 설립되어 2007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고급리브 패션의 리더 모라도는 일본, 미국, 남미, 유럽지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끊임없는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패션의 선구자적 위치를 확보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라도 로고가 새로워졌습니다.

30% off

Event 1

- 2007년 여름 신상품 30% off
- 추천상품번호 필자리, 핸드폰번호 필자리
- 40인 고객은 40% off (제약사항 필자리)
- 3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고급 슬더백 증정

Event 2

그림 그려봐

대형에 바치면 문묘만을 직원들 추천을 통해 무제한 나눔을 드립니다.

- 상품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추천일자 및 번호: 2007. 6. 22. 19:00 ~ 7월 17일 18:00까지

당첨자 발표: 개별문자/모라도 홈페이지 www.morado.co.kr에 게시

이해당사자: 2007. 6. 22. 19:00 ~ 7월 17일 18:00까지

모라도